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중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 및 수생 식물을 포함한 수생 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상품을 수입 항구로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화물운송, 보험, 포장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하는 수입 당시의 수입 상품 가격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란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원산지 목적상 단지 시각적 검사만으로는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또는 소모되거나 그 상품과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상품을 말한다.

자가생산된 재료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또는 소모되는 재료를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신고서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적절한 진술서이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덫사냥, 수렵, 제조, 경작, 추출, 수집, 채집, 포획, 농작,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하는 상품 획득의 방법을 말한다.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 이 장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경우에
는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 가.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상품이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 나. 부속서 3-가에 명시된 세번 변경, 역내가치포함비율(제3.4조), 또는 그
밖의 요건에 합치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의 영역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또는
- 다.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
산되는 경우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국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 나. 당사국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다.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그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부터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양 생물
- 사. 바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한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아.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유엔 해양법협약」 제11부에 따른 그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차.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구되거나 수리될 수도 없으며, 부분품 또는 원재료의 처리 또는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상품, 또는
- 카. 이 조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제3.4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3-가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방식은 다음 중 하나에 따른다.

- 가. 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RVC)

나. 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본선인도가격(FOB)은 제3.1조에 정의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2.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기초한다.

3.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4. 비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그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제3.5조 재료의 가치

1.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직접 수입된 재료의 경우는, 재료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가 획득한 재료의 경우는, 거래가격, 또는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또는 상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간의 관계

가 그 재료에 실제로 지불되거나 지불될 수 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일반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의 총합.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추가할 수 있다.

2. 원산지 재료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비용은 재료의 가치에 추가될 수 있다.

-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서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 가능하거나 달리 회수 가능한 관세 및 조세 외의 것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그리고
-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3.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 다음 비용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다.

-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서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 가능하거나 달리 회수 가능한 관세 및 조세 외의 것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
- 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¹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3.5조제2항가호 및 제3.5조제3항가호의 목적상, “화물운송비”는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내륙화물운송비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화물운송비를 포함한다.

4. 위에서 언급된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평가협정」 상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국제 거래에 적용되듯이, 국내 거래에 적용된다.

제3.6조 누적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2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7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고 적용가능한 세번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 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그러나,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해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3.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부터 제14류까지로 분류된 상품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또는 소비되고 그 과정이 단순한² 혼합을 초과하는 과정인 경우에만 제1항이 적용된다.

4.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필요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² “단순한” 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특별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일반적으로 기술한다.

- 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필요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데,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구분된다.

- 가. 상품 및 재료의 물리적인 분리, 또는
- 나. 수출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LIFO”) 또는 선입선출법(“FIFO”)과 같은 재고관리 기법

제3.9조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정보 설명서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그 밖의 정보 설명서의 원산지는,

- 가. 그 상품의 일부분으로 고려되고, 그 상품이 세번 변경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그 밖의 정보설명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³ 그리고,
-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그 밖의 정보설명서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³ 양 당사국은 부속품, 예비 부품, 도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그 밖의 정보설명서가 이것들이 제시된 상품과 같은 송장에서 별도로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제3.10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 변경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11조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특혜관세대우

이 협정상의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적용된다.

제3.13조 간접재료

- 간접재료는 그것이 생산된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며, 그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자의 회계기록에 등록된 비용이다.
- 이 조의 목적상,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거나 소비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이나, 상품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거나 소모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연료 및 에너지
 - 도구, 형판 및 주형
 -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4조 불인정 공정 및 절차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 또는 절차 중 하나 이상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다. 병 · 캔 · 플라스크 · 가방 · 케이스 ·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라. 세탁, 세척, 면지 · 녹 · 기름 ·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마. 연마, 단순 분쇄 또는 파쇄 또는 단순 절단
- 바.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또는
- 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거나 상품을 부품으로 분해하는 것

제3.15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특정상품의 재료에 대해서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3-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16조 직접 운송

1. 원산지 상품은 제3.2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그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⁴, 또는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경우

제3.17조 준수

이 절의 요건의 준수는 적용가능한 경우 제2절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⁴ 유지 및 보충작업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보세지역에서 수행될 수 있다.

제 2 절 운영절차

제3.1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산지 상품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할 것
- 나.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를 할 것
- 다. 신고 당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할 것
- 라.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 사본 및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에 관련된 그러한 그 밖의 서류를 제공할 것, 그리고
- 마.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신고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할 것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한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신고서, 그리고
- 나. 신청된 특혜관세대우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증거

제3.19조 원산지의 증명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적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원산지 신고서는 이 장 부속서 3-다에 첨부된 원산지 규정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약정에 규정된 형식을 따를 수 있다. 이행 약정은 양 당사국 상호간의 결정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 연락처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나.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 라.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정한다)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 바.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 사. 원산지 신고서의 날짜, 그리고
- 아. 제7항나호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신고서의 경우, 그 원산지 신고서가 포괄하는 기간

4. 원산지 신고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5. 각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출자의 인지
-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 다.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에 관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6. 제5항의 어떠한 규정도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 신고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신고서가 다음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하나 이상의 상품의 단일 수입, 또는
- 나. 최초 신고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명시된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동일상품의 복수 수입

8. 제2항에서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원산지 신고서의 서명일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9. 이 협정이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발효일 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신고서를 수락한다.

제3.20조 원산지 신고서 면제

제3.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 가. 과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 수입의 경우, 또는
- 나. 수입 당사국이 원산지 신고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의 그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입의 경우

다만, 수입이 제3.18조 및 제3.19조의 원산지 신고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21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서류상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실제로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같은 원산지 신고서로 복수의 상품을 신고하는 경우, 열거된 상품 중 하나에 생긴 문제가 그 원산지 신고서에 열거된 나머지 상품의 특혜관세대우 부여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제3.22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원산지 신고서 서명일 후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동안,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고서를 제공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자국의 영역에서 유지한다.
- 1)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내부 부기를 위한 회계에 포함된 것
 - 2)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3)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또는
 - 4)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원산지 신고서로서, 당사국에서 작성된 것, 그리고
- 나.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원산지 신고서 사본을 포함한 그러한 서류를 상품 수입일 후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동안 자국의 영역에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23조 수출에 관한 의무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되거나 허위인 원산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잘못되거나 허위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신고서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수입자와 수입 및 수출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에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한다.

2. 원산지 신고서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그러한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제3.24조 원산지 검증

1.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 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
- 나.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 또는
- 다.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공무원은 참관자로서 그러한 검증 방문에 참여 할 수 있다.

2. 제1항나호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청하고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응답하는 모든 정보는 영어로 전달된다.

3. 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의 목적상,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작성된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 일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아니할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제1항다호의 목적상,

- 가. 검증 방문 수행 이전에 수입 당사국은,
 -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방문 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 2)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된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5.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상품은 검증 과정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증금 또는 비특혜관세를 납부한 경우 반출될 수 있다. 납부된 이러한 보증금 또는 관세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검증 과정의 결과가 나오면 환불된다.

6. 당사국은 관세행정기관이 동일한 상품이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이전에 결정했을 경우, 그 상품이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그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특혜관세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7.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한다. 중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결정되는 경우 회복된다.

8.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7항에 따라 서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품의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서면 결정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 관세행정기관에 전달된다.

9. 수입 당사국은 검증 과정의 시작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결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법적 근거 및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 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어떠한 관련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3.26조 직접 운송 - 준수

제3.16조에서 규정된 직접운송 규정의 준수는 적절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는 관련된 상업 선적 또는 화물 운송 서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27조
제3국 송장**

당사국은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한다.